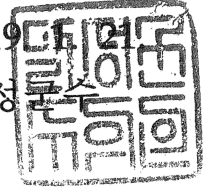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659
----------	------

제출일자: 2019

제 출 자: 달성군수



☐ 제출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 제출사유

-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
-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대응하고 노후 도시재생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2025 대구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활성화지역인 화원읍 천내리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 하고자 함.
- 특히, 올해 공모사업은 전년도와 다르게 지역주민 및 군의회의 의견청취 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신청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본 안건을 마련하여 달성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활성화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본 대상지는 대구교도소의 장기간 입지 및 주변지역의 성장으로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상권이 침체되면서, 도심지역이 쇠퇴하기 시작하여 도심공동화 현상 등의 도시문제가 대두됨
- 쇠퇴지역의 잠재력과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

- 2018. 7.: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미선정)
- 2018. 12.: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방법 변경통보
- 2018. 12.: 공모사업 선정방법 변경에 따른 공모신청계획 착수
- 2019. 1. 18.: 주민공청회 개최
- 2019. 1. 23. ~ 1. 29.: 군의회 의견청취
- 2019. 2.: 활성화계획(안) 신청서 제출
- 2019. 2. ~ 3.: 실현 타당성 평가 및 적격성 검증
- 2019. 3.: 국토부 최종선정
- 2019. ~ 2023.: 사업선정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개요

- 사 업 명: ‘상상과 추억을 함께 만드는 화원마을’ (가칭)
-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 대 상 지: 화원읍 천내1,2리 일원(181,000㎡정도) [붙임]참조
- 사 업 비: 300억원(국비 150억, 시비 75억, 군비 75억)

○ 사업내용

(단위: 억 원)

주요사업명 (사업내용)		위치	사업비
A 중심상권 활성화	①화원시장 스마트 정보센터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서비스망)	화원 공설시장	5
	②화원시장 으뜸상품 판매센터 (특산물 판매, 서비스 교육)		5
	③상업특화가로 조성 (보행환경 개선, 테마가로 조성)	5일장 구간도로	18
	합 계		28
B 도심중심기능 강화	①어울림 문화센터 (스포츠, 문화시설, 공연장 등)	공공복합청사 (4개층)	117
	②어울림 교류센터 (주민 커뮤니티시설, 창업지원 등)	공공복합청사 (1개층)	42
	③꿈나무 상상 어울림센터 (어린이 놀이방, 육아지원센터 등)	시장 주차장	73
	합 계		232
C 도심인프라 개선	①살기 좋은 ‘화원마을’ 만들기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구간 내 골목가로	8
	②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지능형 CCTV, 스마트 가로등 설치)		10
	③아동센터 기능강화 (방과후 학습 및 체험활동 보조)	화원지역 아동센터	2
	④실버커뮤니티센터 (경로당,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등)	천내2리 마을회관	20
	합 계		40
사업비 총 합 계			30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